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62호)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63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 검토	7
1.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비교	7
2. 논의 경과 및 검토 의견	15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21
III .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25
1. 정의	25
2. 국민의 책임	30
3. 장애영향평가의 실시	31
4. 장애인의 권리보장	32
5.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제공 받을 권리	41
6. 장애인권리의 교육·홍보 등	44

7.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49
8. 장애인정책위원회,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52
9.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54
10.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관련 사항	56
11. 부칙	67

IV.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별 검토 68

1.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신설	69
2. ‘서비스의 신청’ 신설	72
3.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신설	74
4.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78
5. 장애인복지시설	82

I. 개요

1.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1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8. 23.
- (3) 회 부 일 : 2024. 8. 26.

나.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 권리침해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사회적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하여 이른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포괄적 접근’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함 (안 제3조).

다.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

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45조).

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53조).

사. 장애인의 학대 및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75조까지).

자.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둠(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316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23.
- (3) 회 부 일 : 2024. 8. 26.

나.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둠(안 제1조).

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사항을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 및 보장, 근로, 건강 및 재활,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지원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 및 제41조).

라.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안 44조).

마.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

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

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시설의 기능을 개편하고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을 사용함(안 제57조).

사.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8조).

아. 종전 법률의 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3612호)으로 이관함.

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3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총괄 검토

1.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비교

□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은 총 6장 8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라 함)은 총 7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먼저, 전부개정안의 경우는 현행법과 비교하여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고,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에 관한 내용이 제정안으로 이관되었음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으며, ‘복지시설’ 등의 명칭 변경, 조문 순서, 가지조항 정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하에서는 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전부개정안의 경우는 ‘주요 내용별 검토’에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대비 새롭게 규정된 사항 위주로 살펴보고자 함.

□ 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그간 장애인 관련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 온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내용 및 구성 체계에서 있어서 아래와 같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여 의학적 판단기준 아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장애 개념을 확대하고 있음.
-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그 관련 업무 수행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사항을 이관받아 규정하면서, ‘장애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상담,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추가하고,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명시하고 있음.
- 제정안은 장애주류화 및 장애포괄적 접근 조치의 개념과 장애영향평가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평등권, 자기결정권,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안전권, 건강권, 주거권 등 장애인의 개별 권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장(제2장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체계적으로 명시하였음.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특별시·광역시 단위에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음.
-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장애아동, 장애노인, 중복 및 소수유형의 장애인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제정안, 전부개정안 비교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안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2조(기본이념)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3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5조(국민의 책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6조(장애주류화 조치)	제6조(장애인복지의 연구)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7조(장애포괄적 접근 조치)	제2장 장애인 복지 지원
제8조(차별금지 등)	제8조(장애영향평가의 실시)	제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조(장애인의 날)	제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10조(국민의 책임)	제10조(국제협력)	제9조(장애수당)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제2장 장애인의 권리보장	제1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12조(존엄권)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3조(평등권)	제13조(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4조(자기결정권)	제14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14조(장애인의 날)	제15조(참정권)	제15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6조(고용 촉진)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17조(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제17조(자금 대여 등)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8조(일할 권리 및 직업선택권)	제18조(생업 지원)
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19조(안전권)	제19조(자립훈련비 지급)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20조(건강권)	제20조(생산물 구매)
제19조(사회적응 훈련)	제21조(재활을 받을 권리)	제21조(건강보건관리)
제20조(교육)	제22조(주거권)	제22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21조(직업)	제23조(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권리)	제23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4조(접근권)	제24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안	전부개정안
		등)
제23조(편의시설)	제25조(이동권)	제25조(장애인보조기구)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제26조(교육권)	제26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7조(문화향유 및 예술활동 에 관한 권리)	제27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 의 폐쇄 등)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 탁 등)	제28조(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제28조(교육)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 포·송출)	제29조(관광·여행 및 여가활 동에 관한 권리)	제29조(정보에의 접근)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 의 제공)	제30조(사법 접근권)	제30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27조(주택 보급)	제31조(장애아동)	제31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 지)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32조(장애노인)	제32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 ·보급 지원 등)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33조(장애여성)	제33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제34조(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	제34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5조(장애인 가족지원)	제35조(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제36조(서비스제공 받을 권리)	제36조(자립지원)
제3장 복지 조치	제37조(정보의 공개)	제37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31조(실태조사)	제38조(장애인 권리보장에 관 한 설명)	제38조(장애동료간 상담)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9조(장애인 권리보장에 관 한 상담)	제39조(성 관련 상담 지원)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 의 장애인 등록)	제40조(사회적 인식개선)	제40조(장애인 주거서비스 제 공기관 거주 장애인 자립지 원)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41조(장애인권리의 교육·홍 보 등)	제41조(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 원센터)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 사)	제42조(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42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 터)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제3장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추진체계	제43조(장애인 가족지원)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43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3장 장애인 서비스 제공 절차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 례관리)	제44조(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44조(서비스의 신청)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제45조(장애인정책위원회)	제45조(장애인 등록)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안	전부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제46조(장애인정책책임관)	제46조(자료의 요청)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제47조(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제47조(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48조(전달체계)	제48조(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49조(종사자 양성 및 교육·훈련)	제49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6조 삭제	제50조(실태조사)	제50조(업무의 위탁)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51조(통계 및 지표의 구축)	제51조(상담 및 정보제공 등)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52조(장애인 정책연구)	제52조(민관협력을 통한 사례 관리)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53조(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제5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4장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제54조(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41조(자금 대여 등)	제54조(금지행위)	제55조(사업수행기관 협력 등)
제42조(생업 지원)	제55조(장애인 권리침해 신고 의무 등)	제56조(장애인복지상담원)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제56조(불이익조치의 금지)	제4장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제44조(생산물 구매)	제57조(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7조(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제45조 삭제	제58조(긴급전화)	제58조(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 평가)
제45조의2 삭제	제59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제46조(고용 촉진)	제60조(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책무)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61조(응급조치의무 등)	제61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62조(법원의 조치)	제62조(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절차)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제63조(피해장애인 쉼터)	제63조(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49조(장애수당)	제64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및 심리)	제64조(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의 의무)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65조(피해장애인 사후 지원 등)	제65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안	전부개정안
		리)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66조(장애인 권리침해정보시스템)	제66조(감독)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7조(권리침해 실태의 보고 등)	제67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68조(장애인권리침해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제6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69조(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의무교육)	제5장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70조(장애인권리침해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69조(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71조(중지명령)	제70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72조(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71조(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3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72조(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74조(장애인권리침해 등의 통보)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제75조(장애인권리침해 예방의 날)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제5장 보칙	제75조(보수교육)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76조(새로운 제도의 개발)	제76조(자격취소)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77조(단체의 보호·육성)	제77조(자격정지)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78조(장애인단체협의회)	제78조(수수료)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79조(권한위임)	제6장 보칙
제59조의2 삭제	제80조(비밀 누설 금지)	제79조(비용 부담)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0조(비용 수납)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6장 벌칙	제81조(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82조(벌칙)	제82조(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83조(벌칙)	제83조(비용 보조)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84조(가중처벌)	제84조(압류 금지)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85조(「형법」 적용의 일부)	제85조(조세감면)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안	전부개정안
	배제)	
제59조의9(금지행위)	제86조(양벌규정)	제86조(청문)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87조(과태료)	제87조(이의신청)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부 칙	제88조(권한위임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제1조(시행일)	제89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2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7장 벌칙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3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0조(벌칙)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4조(장애인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91조(양벌규정)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5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92조(과태료)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 칙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호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 요청)		제1조(시행일)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5조(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조(장애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7조(상담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감독)		제9조(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10조(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제11조(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안	전부개정안
		적용례)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12조(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1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14조(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제15조(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삭제		제1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67조 삭제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등)
제68조 삭제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70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75조(보수교육)		
제76조(자격취소)		
제77조(자격정지)		
제78조(수수료)		
제8장 보칙		
제79조(비용 부담)		
제80조(비용 수납)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81조(비용 보조)		
제82조(압류 금지)		
제83조(조세감면)		
제83조의2(청문)		
제84조(이의신청)		
제85조(권한위임 등)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안	전부개정안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9장 벌칙		
제86조(벌칙)		
제86조의2(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제88조의2(가중처벌)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89조(양벌규정)		
제90조(과태료)		

주1): 음영 표기된 조문은 보칙과 벌칙 규정을 제외한 실체규정 중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유사한 조문

2. 논의 경과 및 검토 의견

□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그간 장애인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손상에 중점을 둔 의료적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장애 정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부재, 수요자를 배제한 공급자 중심 전달체계 등 변화하고 있는 장애 패러다임과 새로운 복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¹⁾

이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를 통해 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 등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관한 국회 논의 지원을 밝힌 바 있음.

□ 현행법의 체제에 대하여 우리 국회에서 2008년 12월 비준하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

1) 남궁은. (202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월간 한국장총, Vol.429.

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심사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고,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종견해를 제시한 바 있음.²⁾

-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새로운 기본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복지총괄법인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개편하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동시에 논의되어 공청회 1회, 법안심사소위원회 3회를 거친 후,³⁾ 그간 발의된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논의 끝에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음.

2)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는 2019년 3월 제출되어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채택

3)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11.24.),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2.4.26.)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3.11.21.)

< 제21대 국회 관련 제출 법안 >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27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2843)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3420)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8025)	「장애인기본법안」 (212448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11316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11284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113419)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118024)	-

주1): 괄호안은 의안번호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검색 후, 정리

□ 앞의 제·개정안의 취지에서 보았듯이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현재 장애인복지 관련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장애인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닌 동정·시혜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우리 국회에서 2008년 12월 비준하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절차를 총괄하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 개념의 확대(제정안), 장애인의 권리 명시(제정안), 장애인정책

추진체계 개편(제정안),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제정안),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와 권리옹호 및 학대 관련 사항(제정안), 장애인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전부개정안),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전부개정안)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다음과 사항 등에 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제정안은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증진의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장애인의 권리침해와 학대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의무 신고대상 및 취업제한, 벌칙 적용 등의 조항에서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제정안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의 책무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내 시설물 건립 등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되므로, 무조건적인 금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교육권 등 각종 권리를 조항별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는 이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위 규범인 법률에서 다시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필요하며, 일부 추상적 개념의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정립 및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넷째, 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서비스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현재 장애인등록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므로,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전부개정안에서는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현행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2541호)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섯째, 전부개정안은 서비스 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록 후 서비스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장애인이 아닌 대상자의 범위와 신청가능한 서비스의 종류 및 장애인 등록을 생략하고 곧바로 서비스 신청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곱째, 전부개정안에서는 사례관리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관리의 의미, 사례관리 실시와 사례관리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여덟째, 전부개정안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록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러한 규율 방식으로 인해 동 조항에서 누락된 기관들은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57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42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937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91호) 등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호 관련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

3. 관계 부처⁴⁾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제정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입법취지에 동의함.
- 다만, 주요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장애인 학대 관련 제4장(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제6장(벌칙)의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이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복지법」은 의료적 장애 개념에 기반하여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 범위가 명확한 반면, 동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사회적 장애에 기반한 장애인(제3조 제1호 및 제2호)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고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학대 처벌규정이 형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또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병합 검토가 필요함.
- (전부개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

4) 보건복지부 외 관계 부처 의견은 소관 업무와 관계있는 개별 조문에 한정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주요 내용별 검토 중 해당조문 부분에서 별도로 소개함.

이고 촘촘한 장애인복지 지원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함.

- 다만, 최근 개정된 조문 또는 시행예정인 조문이 일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검토가 필요하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병합 검토 필요함.

나. 장애인 관련 단체⁵⁾

제정안	전부개정안
• 장애계의 요구를 충족할 새로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예 앞서, 장애계 합의 선행 필요	
•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관련 사업,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에 대한 지원 및 보조, 정보 통신 기술 촉진 등의 업무 추가 필요	• 제59조의 장애인복지시설도 제57조의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인데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하여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전체에 적용해야 하는 규정인데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적용되는 특정조항을 규정함의 문제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현행 장애인거주시설)에만 적용되는 특정조항을 규정함의 문제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있어 법률안 제1조 목적에서 제시한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

5)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나라,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만 적용되는 특정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 등을 이유로 전부개정안에 반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었음에도 국내 법률에는 협약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의 기본권을 정리한 법률의 필요성이 있고, 장애인의 기본권에 기반한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어려워 제정안에 찬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2025년 7월 시행 예정)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
장애인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권리와 권리보장을 요구할 권리,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권리위원회 운영 등의 조항 필요	
장애 개념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장애인’을 포괄적·추상적 개념이 적용된 장애 정의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함이 발생하고, 본 법률안에서 정의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이 달라져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혼란 발생	
접근권의 개념을 정보, 이동, 시설편의에 국한하지 않고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 등 사회 참여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권 개념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장애계의 요구를 충족할 새로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앞서, 「장애인기본법」이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장애계 합의 선행 필요	

Ⅲ.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권리침해”란 장애인 학대 및 제2장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 타.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 파.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하. 제8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 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 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 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장애포괄적 접근”이란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기반한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및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 등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장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정안에서는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권리침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객체로 보고 있음.

□ 장애란 복잡하고 다차원적 개념으로 최근에는 개인의 손상에 기준을 두고 있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⁶⁾

-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란 누구나 손상과 같은 신체상 문제로만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제약에 의해서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 이는 의료적 모델에서는 장애로 보는 사람이라도 이를 보완하는 사회적 시설이 있다면, 장애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 예를 들면 ‘계단만 있는 건물’,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 ‘자막 제공 기능이 없는 TV’ 등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이러한 환경적 불편함이 장애의 원인이라 보는 관점임.⁷⁾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전문과 목적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모델에 따른 장애 개념을 반영하고 있음.

6) 세계보건기구. (2012). WHO 세계장애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기획총서 I.

7) 국가인권위원회. (2007).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제정안의 취지는 장애를 사회·환경적 요인과 신체·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여 의학적으로는 장애로 볼 수 있지만, 사회적·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이를 보완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함으로써,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부가 실시하는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제정안에 따라 장애 개념이 달라지게 되면,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장애인 권리침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까지 그 개념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제6장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상이 다소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임.

- 따라서 법 집행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의 개념 중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처벌적 측면에서는 그 범위를 다소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상의 검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제정안 제3조제3호(장애인 권리침해), 제4호(장애인학대), 제5호(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제정안 제3조제4호(장애인학대) 및 제5호(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규정과 동일함.

2. 국민의 책임

제5조(국민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과 기관의 건립을 반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실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정안은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외 지역사회 구성원인 ‘국민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4항과 관련해서는 ‘제2항의 차별금지’ 및 ‘제5항의 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현의 방해금지 조항’ 등의 일반적 해석을 통해 포섭 가능한 내용으로 보이며,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정당한 이유없이’ 반대하는 것에 대한 금지 등

- 또한 일부 주민의 반대를 법률로써, 금지하기 보다는 그러한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시설 건립이 지체되는 것이 더욱 문제인바, 시설 건립 주체인 공공기관에게 반대를 이유로 건립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장애영향평가의 실시

제8조(장애영향평가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정책 또는 예산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정책 또는 예산 수립 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학계의 일치된 정의는 찾을 수 없지만, 관련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평등을 위하여 시행 중인 법령, 정책 및 실무 관행의 영향을 규명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⁸⁾

□ 장애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65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은 이에 관한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

-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제3장(22개 조문)에서 장애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작성방법 및 장애영향평가위원회, 장애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장애영향평가 교육 등 장애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하고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일적이고 일관된 평가 방법에 관한 기준이 함께 확보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장민영. (2020). 영국의 장애영향평가 법제 현황 및 시사점. 해외법제리포트, 한국법제연구원.

4. 장애인의 권리보장

제12조(존엄권)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유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평등권) ①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인정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법률적 권한을 행사하고자 요구하는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기결정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참정권) ①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공적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치참여권이 보장되고 공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수어통역·안내보조, 선거용 보조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정당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지원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① 장애인은 기초적인 생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일할 권리 및 직업선택권)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직장 내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9조(안전권) ① 장애인은 신체의 자유 및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이하 이 조에서 “학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학대 등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포함해 비상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通報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

방 및 접종·관리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예방을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할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권)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 향상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활을 받을 권리) ① 장애인은 신체·정신·사회 및 직업 능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 및 재활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조기에 적절한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 고용, 교육, 체육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훈련과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주거권) ① 장애인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적절한 시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과 주택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권리) ① 장애인은 주거, 건강 및 재활, 교육, 여가·체육·문화, 정보 등의 삶의 제반 영역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생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

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장애서비스를 필요한만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및 각종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4조(접근권) ① 장애인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의 연구, 개발, 확산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어 지원, 문자통역 지원, 점역 지원, 화면해설 지원, 읽기 쉬운 자료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이동권) ①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 개선과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 및 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기기 지원 및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편의시설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안내 보조, 전기통신, 방송시설 등 인적·물적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권) ①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① 장애인은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전시관, 극장, 박물관과 전시 및 공연 등의 행사에 장애인의 관람·참여·향유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① 장애인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지원, 운동경기 지원,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및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① 장애인은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 및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놀이기구·온라인프로그램·기타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이용, 접근 가능하도록 수련시설, 체험시설, 자연학습시설, 휴양시설, 여가교육시설, 여가학습장 등을 개선하거나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사법 접근권)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 조사, 증인 참여를 비롯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장애인이 사법 조사, 증인 참여를 비롯하여 필요한 사법적 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과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 공무원을 훈련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제2장 장애인의 권리보장’에서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각각 개별 조문으로 구성하여 조 제목에 권리 명칭을 명시하고, 대체로 각 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한 후, 이하 조항에는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책 마련·조치 강구 또는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보호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개별적·구체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와 정부의 정책집행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장애인의 개별 권리에 관한 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12조제1항(존엄권), 제13조제1항(평등권), 제15조제1항(참정권), 제18조제1항(직업선택권), 제26조제1항(교육권)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 재차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격하로 작

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⁹⁾

- 제12조제2항(장애인의 고유성 침해 금지) 추상적인 개념인 장애인의 ‘고유성’ 침해가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개념 정의 필요. 수범자의 입장이 아닌 입법·기술적 표현에 머물 가능성이 우려됨.

예컨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유성(integrity)의 의미에 대해 개인이 인격의 주체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과 상태를 변형하거나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개인 고유의 모습으로서 인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¹⁰⁾도 있으나, 이 역시 비장애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요구받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제13조제3항(평등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받은 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차별이 국가 등이 아닌 사인 간에 발생한 경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분쟁에 개입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모호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 규정 또는 선언적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9)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임권을 가진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모두가 행복할 권리: 사례로 보는 UN장애인권리협약.

- 제14조제3항(자기결정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개인 욕구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라 선택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불명확함.

- 제15조제5항(참정권) 장애인이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후보자 등록에 대한 지원은 출마 시 지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헌법상 평등권 측면에서 비장애인 출마자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어 기본권의 상충이라는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므로,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함께 규정되어야 할 것임.

- 제16조제1항·제2항(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제2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관계부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기획재정부는 제17조(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세제상의 조치를 명시한 부분은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¹¹⁾
-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제27조(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관련, ‘영화’를 장소 개념인 ‘영화관’으로 수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규모와 범위 등에 제한이 없는 행사에 대해 시설 및 설비, 환경개선 의무 부여는 행사 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노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② 제28조(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련, ‘재활체육’을 법률 용어인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③ 제29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관련, 유원시설업체¹²⁾의 놀이기구 선정 자율성 보장, 국내 공급업체 부재, 「관광진흥법」 제34조의3¹³⁾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놀이기구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설치 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1) 이는 비과세·감면 등을 통합·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취지

12) **유원시설업이란**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뜻함.(「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13) 「관광진흥법」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제공 받을 권리

제35조(장애인 가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36조(서비스제공 받을 권리) ①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하되, 수립 과정에서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의견,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서비스결정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서비스의 제공 여부, 장애서비스의 유형, 장애서비스의 제공량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장애서비스를 판정하는 경우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학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필요 정도 및 환경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35조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돌봄 지원, 휴식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리보장에 전반적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전부개정안 제43조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3조(장애인 가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상담 및 교육

2.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제정안 제36조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서비스 판정 시 의학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필요 정도 및 환경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의 경우(예컨대, 일시적인 부상이 발생한 상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장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①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현재 장애인등록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지원 체계에 대한 재검토 및 재정소요 등에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 ② 장애서비스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각각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강행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인력 및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 ③ 장애서비스 판정 시 의학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필요 정도 및 환경 특성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6. 장애인권리의 교육·홍보 등

- 제41조(장애인권리의 교육·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고취하며,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교육, 공익광고 등 홍보 및 그 밖의 인식제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능력과 기여에 대한 장애인 자신과 사회적 인식 모두를 증진하는 계획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장애인 인식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야 하고, 제1항의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 강사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를 포함하여 유치원과정을 비롯한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 존중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과 홍보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침해의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교육, 장애인의 권리옹호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용의 범위에서 제5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6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관한 인식,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인권 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생애주기별 장애인 인식개선 계획 수립 및 전담 부서 지정, 전문 강사 인력을 양성

- 교육부장관: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 존중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홍보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위반행위자 계도교육, 장애인 권리옹호 등에 관한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등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
- 지상파방송사업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 가능

□ 제정안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에 관한 대국민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임.

□ 다만, 제정안 제41조제6항 및 제7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관련 홍보영상을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주체(제41조제5항)가 보건복지부장관임을 고려할 때, 송출 요청 주체 및 협조·지원 요청의 대상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에서는 홍보영상의 송출 요청대상을 「방송법」 제2조제3호14)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므로,

다양한 방송사업자를 포괄·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방송사업자’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전광판방송사업자’¹⁵⁾도 이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의 동 조항과 유사한 입법례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송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의 송출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4)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15)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피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에서는 제정안 제41조제5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사항 관련,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및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② 이미 「방송법」¹⁶⁾에서 방송사는 공익목적으로 광고를 제작·편성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6)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7.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43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장애인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
4. 장애인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장애인 권리보장의 실태 및 개선과제
6. 장애인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 및 운용방안
7.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의 구성과 역할
8. 그 밖에 장애인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45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평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도 5년마다 종합계획에 연계하여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연계하여 장애인정책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특성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을 위한 연도별 계획이 아닌 별도의 지역장애인종합정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가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따르는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 소관부처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장애인정책위원회,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제45조(장애인정책위원회) 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주요정책을 수립·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정책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교육, 고용, 문화, 체육, 이동 및 접근성, 자립지원 등 장애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의 평가 및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정책의 개발·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정안은 장애인 정책의 수립·심의 및 관계 부처 의견 조정 등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위원회와 장애인 정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제정안에서는 그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강화하여 운영하고 자 하는 취지로 보임.¹⁷⁾
- 이와 관련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인정책의 중요도, 포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7)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제53조(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② <u>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③ <u>보장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단위에 지원을 둘 수 있다.</u> ④ <u>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1.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원 2.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통계 및 지표의 구축 및 관리 지원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영향평가 지원 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8. 장애인 권리보장 및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및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9.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도·정책·서비스 등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원 10.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 개발 및 협력사업 지원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⑥ <u>보장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

- 제정안은 장애인정책 수행과 권리보장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이를 지원하고, 관련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

애인권리보장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시·광역시에 그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도·정책·서비스의 모니터링, 장애영향평가 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새롭게 제정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맞춘 기능과 역할을 확대·개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¹⁸⁾

□ 다만, 특별시·광역시 단위에 지원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원의 역할과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 또는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개발, 통계 및 지표의 구축·관리와 각종 평가 등의 업무는 국가기관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것이어서 행정기능의 포괄적 위임 측면이 있으며, 정책개발부터 집행, 평가 업무를 하나의 민간기관에서 모두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할 것임.

18)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관련 사항

제55조 (장애인 권리침해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2조제7호¹⁹⁾에 따른 권리침해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59조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6.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

- 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2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등 교직원 및 강사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2.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6.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의 관련 사항 종사자
 2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9. 「장애인복지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에 소속된 자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3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장애인 대상 권리침해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관할 지역의 제59조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긴급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교육, 연구, 홍보, 실태조사, 자료 발간
 3.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연계·협조체제 구축
 4.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보급
 5. 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6.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근무자에 대한 직무교육
 7.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8.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장애인 권리침해정보시스템의 운영
 9. 장애아동학대(장애인학대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말한다) 예방 및 장애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 장애아동”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전국적 범위의 업무
- ② 권리침해를 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둔다.
1. 장애인 권리침해 신고접수, 상담 및 현장조사
 2.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의뢰
 3. 권리침해를 받은 피해장애인에 대한 임시조치 및 보호
 4. 권리침해를 받은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가족 및 장애인 권리침해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 및 교육
 5. 권리침해를 받은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에 필요한 서비스 상담, 정보제공 및 서비스 신청
 6. 장애인 판정, 서비스 심사 및 결정 과정의 권리옹호 활동
 7.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기타 법률구조활동
 8.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의 마련
 9. 장애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45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업무
-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장애인 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과 상담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닐 것
- ⑤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책무)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옹호를 위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 권리옹호 등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중립성 및 독립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감독권한을 넘어서는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권리보장과 옹호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건의 등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건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피해장애인 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

- 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과 성인을 위한 장애인쉼터(이하 “장애인쉼터”라 한다)를 각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장애인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의 긴급보호
 2. 피해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정신적 회복과 재활
 3. 피해장애인의 가정 또는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4.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업무
- ③ 장애인쉼터의 보호기간은 긴급보호를 위한 일시적 기간으로 제한되며, 장애인쉼터는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장애인쉼터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장애인의 배우자, 그 밖의 가족을 함께 생활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장애인쉼터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역 내 장애인 지원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장애인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장애인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이용기간,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4장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서는 장애인학대에 관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의 관련 규정²⁰⁾을 이관하여 오면서,

‘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한 신고의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장애인학대’에 더해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취지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 등의 폭력이나 가혹 행위 등과 같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장애인 학대행위 외,

19) 제정안 제32조제7호는 없으며, 제32조는 다음과 같음

제32조(장애노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노인의 권리 증진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노인이 소득, 돌봄, 건강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받고, 문화, 여가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9(금지행위),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59조의19(장애인학대 정보시스템) 등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과 같이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제정안 제55조), 긴급전화 설치(제정안 제58조),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업무(제정안 제59조), 응급조치의무 등(제정안 제61조),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 등(제정안 제65조), 장애인 권리침해정보시스템(제정안 제66조), 권리침해 실태의 보고 등(제정안 제67조), 장애인 권리침해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제정안 제68조),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의무교육(제정안 제69조), 장애인권리침해의 예방과 방지 의무(제정안 제70조), 피해장애인 쉼터(제정안 제63조), 장애인권리침해 등의 통보(제정안 제74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아래와 같은 조항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55조(장애인 권리침해 신고의무 등)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발생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또는 성범죄, 권리침해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제2항의 규정 중 인용조문인 제32조제7호는 제정안에 없는 조문임).

이는 장애인 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도모하는 동

시에 특히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장애인 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더 강화된 신고의무까지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제정안 제8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을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침해 대상인 권리도 제55조에서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침해 발생 미신고에 대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58조(긴급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미 제55조에서 신고할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시 긴급전화를 설치한다면,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동 조항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긴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전화신고용 번호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긴급전화는 정말로 긴급한 상황을 구체화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용하거나, 현재 운용 중인 신고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제59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기관의 의미상 국가만이 그 주체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주체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보임.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59조 제3항은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민간 기관이 공공기관에 각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의 엄격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공된 정보 관리에 관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제60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책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 업무 수행, 중립성, 비밀 엄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간섭할 수 없으며,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시정 건의·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0조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간섭을 금지하고 있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가로부터 부여된 장애인 정책과 종합계획 등의 일부를 담당하므로, 국가의 정책방향과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 국가 등의 감독 권한을 넘어서는 지시와 간섭을 금지하는 것은 장애

인 정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제63조(피해장애인 쉼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제59조의3²¹⁾을 이관해 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설치를 의무 설치로 변경하고, 대상 요건을 ‘장애인학대로 인한 피해’에서 ‘권리침해’로 확대하였으며,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수용하도록 개편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과 분리하여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비교적 최근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는 점²²⁾, 이미 전국에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 아동은 아직 심신이 성숙하지 않아 절대적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에 따른 ‘장애인쉼터’를 성인과 아동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2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2)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2021년 7월이며, 2022년 1월 시행됨.

<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현황 >

시·도	장애인 쉼터(개소)	피해장애아동 쉼터(개소)
서울	2	2
인천	1	2
경기	2	2
강원	1	-
대전	1	-
세종	1	-
충남	1	-
충북	1	-
대구	1	-
경북	1	-
부산	1	2
울산	1	2
경남	1	-
광주	1	-
전남	1	-
전북	1	-
제주	1	-
계	19	10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정안 ‘제4장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 옹호’는 ‘제6장 벌칙’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장애인 개념의 비교 >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란 <u>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u> 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42호)의 경우, 제정안 ‘제4장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 옹호’와 관련한 내용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11. 부칙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정안의 부칙에서는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두지 않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만 두고 있음.

–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은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법령이 개별적으로 정비되지 않더라도 해당 법률 제정·개정·폐지의 효력이 그 법률 또는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관련 법률의 외형상 변화가 없어,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일괄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석상 혼란과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통해 최대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보충적으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²³⁾

23) 국회 법제실, (2024). 법제기준과 실제.

IV.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별 검토

□ 전부개정안은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현행 「장애인복지법」 중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가지조항 정리 및 조문 순서 등 전반적인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①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 센터의 설치 근거, ② 서비스 신청, ③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④ 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명칭을 변경하였음.

이하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대비 새롭게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함.

1.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신설

제40조(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과 법정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지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퇴소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애인의 특성, 자립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임대료 지원 등 주택지원 방안
2. 주택개조, 주거급여, 주거유지 지원 등 주거서비스 제공 방안
3. 활동지원서비스, 건강 및 재활서비스 등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 방안 등
4. 자립정착금 지원, 이주 지원 등 초기 정착 지원 방안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거주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퇴소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1.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체벌, 폭행, 학대, 유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관
2.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관기준의 현저한 미달, 부적절한 기관운영 등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퇴소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전환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중앙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내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의 퇴소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지역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부개정안에서는 ①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현행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자립지원조사를 실시하고, ② 이를 바탕으로 퇴소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등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의 거주 전환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국회에서 2008년 12월 비준하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바,²⁴⁾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의 거주전환과 자립지원을 위한 규정의 신설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조항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2541호)과 세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1: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조문 비교).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전부개정안 제40조 및 제41조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내용은 최보윤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조정이 필요하며,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거주시설 이용자 등을 포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2. ‘서비스의 신청’ 신설

제44조(서비스의 신청) ①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제45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5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제49조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전부개정안은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사람은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신청대상을 등록장애인이 아닌 사람까지 확대하여 현행 장애인등록제의 제도상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제49조제1항25)의 서비스에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보조기기 지원 등이 포함되는바, 이는 등록장애인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 보이므로,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먼저 검토한 후, 하

25)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9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 또는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퇴소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3. 제62조에 따른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위 법령으로 ‘등록장애인이 아닌 서비스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신설

제5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의 사례관리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51조에 의한 상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1. 서비스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기간 및 제공자 2.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2조의 사례관리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이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퇴소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2항의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을 포함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할 수 있다.</u>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평가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부개정안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사례관리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에 대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사례관리는 그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를 정의한 문헌에서도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의 내적 자원 및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론 중 하나로,²⁶⁾ 설명하고 있어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음.

26) 엄명용·김성천·윤혜미, (2020).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5판, 학지사.

- 전부개정안 제52조²⁷⁾(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과 동일한 내용)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 전부개정안의 취지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장애인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전부개정안에서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행상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관리를 모든 장애인에게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외된 장애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므로, 매우 민감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은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27) 「전부개정안」 제52조(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과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 시행과 동시에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유사입법례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수 있는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그 수립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제57조(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 또는 개별법에 따른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35조의 인식개선교육기관
2. 제41조의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3. 제42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 제43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물 생산시설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
1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역보조기기센터
15.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57조에 따른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69조에 따른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위탁 조건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부개정안에서는 제57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들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각기 다른 개별법에 따른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이 열거되어 있음.

□ 이처럼 법률에 직접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까지 실시하게 된다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제공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전부개정안에서와 같이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일이 열거(각호에서 정한 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하는 규율 방식은 실제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동 조항에서 누락되는 경우,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며, 새롭게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설될 때마다 계속하여 동 조항의 개정소요가 발생하는 등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제한되므로, 현실적으로 누락되는 기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참고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은 동 조항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 평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²⁸⁾에 따른 시설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²⁹⁾에 따른 성과평

28)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를 받고 있는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5. 장애인복지시설

전부개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그 준비를 지원하는 기관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기관 3.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5.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부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시설’에서 ‘○○제공기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음.

- 이는 기존 ‘○○시설’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수동적·시혜적 어감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리성을 보다 강조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명칭 변경으로 보임.

□ 다만 전부개정안에서는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의 명칭은 변경하면서, 조 제목과 제1항 본문은 현행법에서와 같이 그대로 ‘장애인복지시설’로 유지하고 있는데,³⁰⁾

명칭 변경의 취지를 고려하면 변경된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상위 개념을 조 제목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예컨대 ‘장애인복지기관’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502

30) 이러한 이유는 전부개정안 제57조에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조 제목으로 하면서, 각 호에서 다시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고 있어, 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참고자료 1: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조문 비교>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 관련	
「전부개정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41조(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전환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중앙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내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의 퇴소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지역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한 연구 및 홍보 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인력의 교육·연수 및 양성에 관한 업무 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광역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따른 자립조사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립육구조사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자립 및 주거 전환 준비·전환·정착 과정 지원 4.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5.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정착 상황에 대한 평가와 사후 관리 6.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상황 평가 7.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교육, 복지지원정보 제공, 관련 기관 간 연계
--	---

	8. 시·도지사가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광역통합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광역통합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광역통합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5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40조(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과 법정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지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퇴소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애인의 특성, 자립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임대료 지원 등 주택지원 방안 2. 주택개조, 주거급여, 주거유지 지원 등 주거서비스 제공 방안 3. 활동지원서비스, 건강 및 재활서비스 등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 방안 등 4. 자립정착금 지원, 이주 지원 등 초기 정착 지원 방안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거주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9조(대상자 확인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① 시장등은 제17조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지원 수급 자격, 지원사항 등의 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조사(이하 “자립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자립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욕구 조사(이하 “자립욕구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자립욕구조사는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③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욕구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제17조제1항의 장애인을 말하며, 제2항에 따라 자립욕구조사 대상으로 확인된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장애특성 3. 신청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
---	--

우선 퇴소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1.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체벌, 폭행, 학대, 유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관 2.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관 기준의 현저한 미달,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퇴소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소득·재산, 건강 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립조사 및 자립육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자립조사 및 자립육구조사 시행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보호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자립 지원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무원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	---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이 제1항에 따른 자립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립육구조사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이하 “개인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지원 가능한 관련 급여와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지원 방법 등 2.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
--	--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립조사 또는 자립육구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개인별 지원계획은 해당 장애인의 자립 예정지역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참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의 승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은 개인별 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방법·절차·내용, 변경·수정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